

# 1. 예산총칙

2025년도 추경 3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29,893,266	27,896,798
일반회계	870,993,187	26,129,796
특별회계	58,900,079	1,767,002
기타특별회계	58,900,079	1,767,002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10,315,805	309,474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372,272	101,168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279,500	8,38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65,570	25,96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076,146	152,284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99,259	26,97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63,518	22,90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050,969	151,529
수질개선특별회계	28,257,040	847,711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4,020,000	120,600

제 2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53,270,854천원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7,451,897천원을 포함한다.

제 4 조 202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5,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